

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3. 제안이유

- 내부부장관으로 부터 시.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준칙안과 같이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공유임야관리에 따른 대부(사용)요율 산정기준을 산림법상이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하고,
-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임야관리 조항중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'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책임수행사업,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용되고있는 사업등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.폐합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서도 공유림의 보존, 확대등 관련업무의 효율적.지속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통폐합함에 있어 조항중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과 공유임야 관리 따른 대부(사용)요율 산정기준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## 6. 칙 부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